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74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박희승 · 박용갑 · 윤준병
이원택 · 오세희 · 이춘석
김윤덕 · 백선희 · 소병훈
정준호 · 박해철 · 김남근
서영교 · 박홍배 · 임미애
윤후덕 · 김준혁 · 박상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1. 「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 예정)으로 약물측정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동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그간 약물운전 금지 위반 등의 범죄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으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및 법정형 상향으로 관련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복잡하

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사건 접수건수도 늘고 있으며, 약물 측정불응죄도 신설되어 재범 사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의 업무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아울러 약물운전죄, 약물측정불응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 다른 범죄는 모두 단독판사 관할임을 고려할 때 법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 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 1. · 2. (생략)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 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바. (생략)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u>제3항제1호 및 제2호</u> 에 해 당하는 사건 아. (생략) 4. ~ 6. (생략) ② (생략)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u>제3항제1호·제2호 및 같</u> <u>은 조 제4항</u> ----- 아.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